

## 1. 교과편성

- 1.1. 건축학부의 졸업이수를 위한 기준 및 교양과목 이수기준은 건축대학편람에 의한다.
- 1.2. 건축학 전공 교과목들의 목록 및 주요사항은 '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 전공교과 목록'에 의한다.
- 1.3. 매학기 교과목 개설은 다음 건축학부 편람의 교과이수모형에서 요구하는 각 학기별, 학년별 교과목들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 교수의 사정에 의해 강좌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담당 교수가 적격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개설학기 기준을 따를 수 없을 경우 학부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 1.4. 강좌별 최대 수강인원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론 강좌 : 60명. 단 강좌의 성격과 강의 장소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1,2학년 설계 강좌 : 14명
  - 3,4학년 설계 강좌 : 14명
  - 기타 실습강좌 : 30명
- 1.5. 각 교과목별 개설 강좌 수는 학기 시작 전의 계획대로 운영한다. 즉, 수강신청 결과 수강 희망 학생이 수강 가능 최대인원을 초과하는 강좌가 발생하여도 강좌 수를 증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 희망 학생이 수강 가능 최대인원을 초과하는 강좌는 차년도 강좌 개설계획 시에 강좌 수의 증설을 검토, 반영한다.
- 1.6. 계절학기는 설계 워크샵 및 국제설계 워크샵을 기본으로 하며, 해외 대학과의 교육교류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 되는 강좌나 학년별 설계교과 보충교육, 지도교수와의 실무설계프로젝트 수행 참여 등을 위해 개설한다.

## 2. 교과과정 이수기준

### 2.1. 일반사항

- 2.1.1. 교과수강 지도는 다음 교과이수모형을 기준으로 한다.
- 2.1.2.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의하며, 학년 제한 없이 모든 전공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본 2.2항 교과과정 이수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강좌별 수강 최대인원을 제한한다.
- 2.1.3. 졸업을 위한 교과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표 1, 2]의 전공 및 교양교과의 영역별 최소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졸업을 위한 최소학점은 전공 112학점, 교양 48학점, 일반선택 4학점으로서 총 164학점이다. (2005년 - 2008년 입학생은 전공 112학점, 교양 48학점, 일반선택 5학점으로 165학점, 2002년 - 2004년 입학생은 전공 112학점, 교양 48학점, 일반선택 15학점으로 175학점이다)
- 2.1.4. 건축설계1, 2와 같이 모든 전공교과 중 순번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만 수강이 가능(설계교과의 경우 2.2.참조)하며 여기에서 수강이라 함은 낙제학점이 아닌 이수학

점 이상의 성과를 일컫는다.

2.1.5.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의 전공과목들은 학점세탁을 위한 재수강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학부에서 개설한 모든 전공/교양 과목들에 대하여 F학점일 경우에 한해서 교칙에 의한 재수강이 허용된다(교양과목의 경우 건축학부에 소속된 학생만 적용). 이 항의 시행일은 2013. 3. 1자이고 2013학번 신입생부터 일괄 적용된다.

2.1.5.1. 위 2.1.5항의 재수강 제한 대상자(2013학번과 그 이후 건축학부 재학생)로서 과거 F 학점 이외 학점을 받은 학생이 같은 전공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그 과목의 과거 학점을 최종성적의 상한선으로 적용 받는다. 이 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2.1.6. 건축학개론은 1학년 설계교과 수강시기에 이수하며, 2013학번부터 졸업을 위해 필수 이수되어야 한다.

## 2.2. 설계교과 이수기준

2.2.1. 모든 설계교과는 내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예외기준 이외에 순차적으로만 수강 가능하고, 건축설계1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표현1, 2를 수강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초 건축 설계관련 교과목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한다.

2.2.2. 설계교과의 경우 한 학기에 두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2.2.3. 설계교과에서 낙제한 학생들의 자구노력 가능성을 제공하며, 설계 워크샵을 하계방학에 계절학기과목으로 개설한다. 이 강좌를 자율학습과목 방식으로 운영하며 6학점(120시간)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 가능한 수업운영방안을 실행한다. 수강신청 학생수에 관계없이 개설 가능하도록 조치하되, F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계절학기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성적 상한선은 B+로 제한한다.

2.2.4. F학점으로 설계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이수 못한 설계학기 바로 다음 단계 설계과목만 수강 가능하며, 그 이후 단계의 설계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계절학기에 <설계 워크샵>을 이수하여 이수 못한 설계과목에 대한 대체 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계절학기 과목 수강에 의한 대체이수인정은 한 학생 당 단 1회에 한하고, 과거에 설계과목 F학점을 받은 학생에 한한다.

2.2.5. (특별예외규정) 2006년도 1학기 현재 불일치복학 등의 사유로 설계과목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 2006학년도 하계방학 계절학기 <설계워크샵>을 수강하여 이수 못한 설계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단, 대체 수강 대상 설계과목은 현재 수강중이거나 기수강한 설계과목의 수준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또한, F학점이 아닌 불일치복학 등을 사유로 한 대체이수 인정은 이번 1회에 한하며 이번에 대체이수를 한 학생은 추후 F학점으로 인한 대체이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2.2.6. 설계반 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수강신청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의해서만 수강신청 하도록 한다. 수강신청의 절차는 수강신청-예비수강신청-수강신청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수강신청과 예비수강신청을 거치지 않은 학생은 설계수강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2.6.1. 예비수강신청 해당 설계교과에 대해 예비수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강할 경우 학기말 최종 학점은 두 단계 낮게 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예시 : 학기말 최종성적 평가 B+일 경우 C+ 부여됨) 이 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2.2.7. 졸업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7과 건축설계8의 지도교수는 건축대학에서 정한 건축

설계7 수업을 위한 예비수강지원절차를 따라야 하고, 절차에 의해 결정된 지도교수가 건축설계8까지 지도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재학 중 또는 복학예정 학생이 사전에 공지된 졸업설계반 배정을 위한 예비수강지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시도할 경우 다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축설계7 및 건축설계8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2.3. 편입학 및 복학 교과 이수기준

- 2.3.1. 편입학 또는 복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2.2.1 및 2.2.2항의 일반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 2.3.2. 2002년 이전 입학한 학생으로서 복학, 재입학하는 모든 학생과 편입학생은 복학/편입/재입학 학기 초에 교과지도 담당 교수와 상담 후 수강신청(변경)하도록 하며, 담당교수는 상담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2002년 이전 입학한 학생으로서 복학, 재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복학/재입학한 학기 초에 4년제, 5년제 선택을 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 2.3.3. 편입학 및 복학생들의 교양과목 이수기준은 학교(명지대)에서 마련한 기준을 따르되, 건축대학의 5년제 교양과목 최소이수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5년제로 편입/복학한 학생들은 성적증명서 및 학습 자료들을 구비하여 수강지도위원회의 수강 지도를 받아 '건축학부 복학 및 편입생을 위한 5년제 교과이수 인정목록'(아래 그림 참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졸업이수를 위한 교양교과 목록을 최종 결정한다.
- 2.3.4. 편입학 학생들의 전공교과 이수 인정 : 설계과목의 경우 설계기초과정에 상응하는 과목들을 이미 이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적대학에서 설계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4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최대 8학점까지(1학년 과정에 해당), 6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최대 18학점까지(1, 2학년 과정에 해당)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타 전공교과는 전공과목 영역(설계교과영역을 제외한 8개 영역)별로 각각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 2.3.5. (특별예외규정) 2004년도 1학기 편입생(2004 4월 현재 8학점 이수 인정받고 3학년 1학기 설계 + 1학년 1학기 설계 수강중)에 대해서는 <설계 워크샵> 2회 수강으로 2학년 설계과목 2개를 대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강중인 1학년 1학기 설계는 이미 이수인정을 받은 과목이므로 이를 이수한다 해서 설계과목 이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의 지속 수강 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긴다.

### 2.4. 건축학부 전과(전출) 사정기준 (2014.3.1.부터 시행)

- 2.1.1. 건축학부 소속의 학생이 타 학과(부)로 전과하기 위해서는 명지대학교 학칙에 의한 기준 충족 외에 전출신청 시점까지의 해당 학년 의무수강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2.1.2. 건축학부장은 전출 희망자 면담 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출을 승인한다.